2018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 안내

1. 2018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

-. 2018년 8월 29일(수) ~ 9월 28일(금) 18시 (마감 일시 준수) / 21일간

2. 후보자 등록 방법

가. 후보자(지역구·전국구)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,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.

(9월 28일 18시 도착분에 한함)

※ 문의(담당) : 본부 운영지원국 김희강 차장 (070-7099-1706)

나.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

- ① 2018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② 공의원 후보등록서(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1) 1부
- ③ 공의원 후보추천서(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2) 1부 :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
- ④ 의무 이행 확인서(소정양식) 1부 : 지부장 발행(지부 직인 포함)

[참고] 3회 임원선거세칙 제6조(추천 후보자 수 제한) 통상단우 1인은 전국구·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, 이를 초과하여 추천했을 경우에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.

3.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

- 가. 후보자(피선거인) 자격
 -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
 - ②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% 이상 납부
 - ③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
 - ※ '월례회 및 공식행사'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.
 - ※ ②, ③번 기준일 : 2017. 1. 1 ~ 2017. 12. 31

나. 자격제한

- -.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(기준일 2015. 1. 1 ~ 2017. 12. 31).
 - ※ 임원의무금(임원회비)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 함.
- -. 통상단우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(2016년 8월 29일 이전 서약자에 한해 가능)
- -. 본부,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.
- -.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.
- -.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.
- -. 기타 각종규정, 세칙,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 한할 수 있음.

다. 관련 규정

-. 3회 임원 선거 규정

제2조(선거인)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. 제3조(선거권과 피선거권)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.

② 본부,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

-. 3회 임원 선거 세칙

제3조(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) ①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 단,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(2013. 12. 5. 개정)

- 1.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
- 2.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
- 3.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
-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(2013. 12. 5. 개정)
 - 1.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,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 - 2.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(2015. 12. 4. 개정)
- ③ 기타 각종규정, 세칙,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.(2013. 12. 5. 개정)

-. 단우 관리 규정

제13조(의무면제 단우) ① 단우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지부에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소속지부 임원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- ②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
- ③ 의무면제 단우가 활동 재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의무금 납부 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해야한다. 이 경우 소속 지부는 의무면제 단우에게 의무면제 해제 통보서를 발부하며, 의무면제 단우는 각종 권리가 회복된다.

제13조의2(단우 권리의 제한) ①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2년 이상 약법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우는 지부 임원회의의 결의로 약법 제19조에 명시된 단우의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 ② 단우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지부는 해당 단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2. 24.]

제13조의3(단우 권리의 회복) ① 권리가 제한된 단우가 복권을 하고자 할 경우 지부 사무처에 복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② 지부는 복권신청을 하고 3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한 단우의 권리를 회복시키고, 이를 즉시 통지하다.

[본조신설 2018. 2. 24.]

[별첨1]

공의원의 임무와 권한

◎ 임기: 3년 (2018. 12. 1 ~ 2021. 11. 30)

◎ 약법 제9조(공의회) ① 공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. 공의회 의장, 이사장, 이사, 감사의 선출 및 해임
- 2. 약법의 개정
- 3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4. 사업계획 및 예.결산의 승인
- 5. 이사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심의 의결
- 6.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

○ 3회 운영 규정 제10조(의무 및 자격상실)

- ① 공의원은 단의 결의를 모범적으로 실행해야 하고,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, 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② 공의원이 6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보고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불참할 때에는 공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
◎ 공의원 의무사항 : 임원의무금(임원회비) 매년 40만원 납부